

『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태근 의원 외 9명

2. 폐지이유

-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·군 단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, 제4조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1항

5. 검토의견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범위에관한조례」를 제정('95.1.1. 조례 제81호)하여 운영하여 왔으나,
-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5097호 '96.6.29.)되면서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